

제4기(2007~2010)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6년 11월 13일 부천시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6년 11월 14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○ 제132회 부천시의회(정례회)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(2006년 12월 12일)
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원미구 보건관리과장 권병혁)

□ 제안이유

○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어 지역특성 및 보건의료 욕구에 맞추어 지역중심의 보건의료사업 추진을 위해 제4기지역보건의료계획(안)을 작성함

○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(안)은 4년간(2007~2010)의 계획으로 지역진단, 설문조사(시민, 보건소 이용주민, 보건의료전문가, 정책결정자, 보건소 직원), 계획안 공고, 건강생활실천및지역 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작성된 것으로 본 계획(안)을 효율적, 합리적으로 수행하여 부천시민의 평생건강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포괄적인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으로 시민건강 최우선 건강도시 부천을 창출하고자 함

□ 주요골자

- 지역사회 현황분석 및 중점과제 선정
- 중점과제 해결전략 수립

- 건강증진사업 계획
- 구강보건사업 계획
- 개별사업 계획
- 지역보건기관 확충 및 정비 계획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 의 내 용	답 변 내 용
○ 타 시·군 추진사례와 비교분석 등 보다 실질적이고 세밀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용역을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?	○ 타 시·군 추진사례를 분석하여 내년도 연동계획 수립시 반영토록 하겠음.
○ 제3기 보건의료계획에 대한 평가는 실시했는지?	○ 내년도에 평가를 실시할 계획임.
○ 2005년 이전계획에 대한 평가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, 3기 계획에 대한 평가가 반영되지 않는 채 4기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는가?	○ 사업별로는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 4기 계획에 반영하였음.
○ 건강도시 가입시기를 2010년으로 계획한 것은 추진의지가 약한 것 아닌가?	○ 4기 계획기간을 반영한 것으로 빠른 시일내에 가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.
○ 전반적인 4기 계획이 3기 계획과 연동되지 않은 채 목표를 너무 높게 잡고 있는 것 아닌가?	○ 사업별 목표는 시민건강을 위해 최대한 높게 잡았으며,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.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○ 없 음

나. 반대토론

○ 없 음

5. 심사결과

○ 원안의결

▶부대의견 : 제4기 계획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·보완하여 내년도 연동계획에 반영해야 할 것임.

6. 소수의견 요지

○ 없 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 음

제4기(2007~2010년)지역보건의료계획안

의안 번호	제58호
의결 년월일	2006.12.21 (제132회)

제출년월일 : 2006. 11. 13.

제출자 : 부천시장

□ 제안이유

-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어 지역특성 및 보건의료욕구에 맞추어 지역중심의 보건의료사업 추진을 위해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(안)을 작성함
-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(안)은 4년간(2007~2010)의 계획으로 지역진단, 설문조사(시민, 보건소 이용주민, 보건의료전문가, 정책결정자, 보건소 직원), 계획안 공고, 건강생활실천및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작성된 것으로 본 계획(안)을 효율적, 합리적으로 수행하여 부천시민의 평생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포괄적인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으로 시민건강 최우선의 건강도시 부천을 창출하고자 함

□ 주요골자

- 지역사회 현황분석 및 중점과제 선정
- 중점과제 해결전략 수립
- 건강증진사업 계획
- 구강보건사업 계획
- 개별사업 계획
- 지역보건기관 확충 및 정비 계획

□ 관련근거

- 지역보건법 제3조, 제4조
- 지역보건법시행령 제3조, 제4조, 제5조